

반월역 두산위브 더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문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주별 방문예약제 및 당사 홈페이지 운영 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주별 관리시 방역 인력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정부정책 등으로 건물주별 관리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반월역 두산위브 더 센트럴 시아버 건반주택(www.banwol.com) / 반월역 두산위브더센트럴.com 및 방문 예약제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공금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주택과 - 35312호(2021.11.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4층 7개동 총 725세대 중 일반분양 207세대 [특별공급 101세대(일반(기만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신혼부부 41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4세대 포함)] 및 부대리사실
- 입주시기 : 2025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II 공금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만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일부)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11월 15일(월)	11월 16일(화)	11월 17일(수)	11월 18일(목)	11월 24일(수)	11월 26일(금) ~ 11월 30일(화)	12월 06일(월) ~ 12월 08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반주택 내방접수 (방문예약제 운영)	건반주택 내방계약 (방문예약제 운영)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반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 구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예약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예약 가능) -당첨자 서류접수 : 11월 24일(수) 10시부터 예약 -계약 체결 : 12월 1일(수) 10시부터 예약 당사 건반주택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193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반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행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반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모델	주택면적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차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인정 주택	2021000790	01	059.9464A	59A	59.9464	21.1521	81.0985	39.3404	120.4389	26.60	42	5	4	8	1	2	20	22	10	
		02	059.8029B	59B	59.8029	21.1013	80.9042	39.2462	120.1504	26.53	2	-	-	1	-	-	1	1	-	
		03	075.9970	75	75.9970	22.6964	98.6934	49.8739	148.5673	33.72	162	15	16	32	5	12	80	82	6	
		04	079.9924	79	79.9924	24.5146	104.5070	52.4959	157.0029	35.49	1	-	-	-	-	-	-	1	1	
합계												207	20	20	41	6	14	101	106	17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식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한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표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법(단위원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생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비율은 현재의 자락공부상 대지면적을 주택면적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확량 및 공무부처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가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평형에 따른 규방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의 등기부상의 면적치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오차면적은 각 단지의 특정 세대에 합산하여 등기시 등재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 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은 필로티를 제외한 1층 세대를 배정하였으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가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 · 층 · 향 · 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약식 표기 (타입)	공급 세대 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59A	42	101동 4층 102동 1호 103동 1,2,3,4호	1층	3	141,120,000	250,880,000	392,0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2층	5	145,800,000	259,200,000	405,0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3층	6	150,120,000	266,880,000	417,0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5~20층	2	154,800,000	275,200,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21층이상	1	156,600,000	278,400,000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층	4	144,000,000	256,000,000	40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2층	5	148,680,000	264,320,000	413,0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23,900,000
			3층	9	153,360,000	272,640,000	426,0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5~20층	5	158,040,000	280,960,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21층이상	2	159,840,000	284,160,00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59B	2	102동 2호	5층	2	157,680,000	280,320,000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2층	3	178,920,000	318,080,000	497,0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75	162	106동 1,2,3,4호	3층	4	184,680,000	328,320,000	513,0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4층	4	186,480,000	331,520,000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5~20층	55	190,440,000	338,560,000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21층이상	22	192,240,000	341,760,000	534,0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1층	2	176,760,000	314,240,000	491,0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47,300,000	
			2층	3	182,520,000	324,480,000	507,0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52,100,000	
			3층	4	188,280,000	334,720,000	523,0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56,900,000	
			4층	4	190,440,000	338,560,000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5~20층	55	194,040,000	344,960,000	539,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21층이상	6	196,200,000	348,800,000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79	1	104동 2호	2층	1	197,640,000	351,360,000	549,0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상세내용은 사안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할법령 제60조)
 ※ 상가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총액 등으로 차등용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차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대출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IV 특별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75	79	합계
일반(기만추천) 특별공급	국가공공자	국가공공자	1	-	2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2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2	-	3
		중소기업 근로자	1	-	3	-	4
	장애인	경기도	1	-	3	-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2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경기도 거주자	2	-	8	-	10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	8	-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8	1	32	-	4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5	-	6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2	-	12	-	14
		합계	20	1	80	-	101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에게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상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기만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만자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본인 (단, 거주오간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만자의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4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2018.12.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자가나 미혼인 자녀(인양을 포함, 혼인중인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 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유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V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
-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처에게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 이상 저축하거나 미혼인 자녀(인양을 포함, 혼인중인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를 납입할 것
 - ② 세대주일 것
 -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④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단,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됨.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상가 1순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VI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참고사항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4-244782	인정프린스아파트 외 공동명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예) 102동 201호 홍길동 → 102201홍길동 예) 101동 1403호 이무개 → 101140301무개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가계약은 상가계약에 납부하여야하며, 무주택 입주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201홍길동)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입입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반주택에서 현상수입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가 분양대금 납부계획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청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당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